

주요국 식품 리콜 사례 및 제도 분석

2024.12.

[목 차]

I. 주요국 식품 리콜 사례 분석	5
1. 미국	5
2. 유럽연합(EU)	8
3. 일본	12
 II. 주요국 식품 리콜제도 분석	 16
1. 미국	16
2. 유럽연합(EU)	28
3. 일본	38
 III. 결론 및 시사점	 48
1. 국가별 제도 비교분석	48
2. 수출 시 유의사항	50

주요국 식품 리콜 사례 및 제도 분석

1. 주요국 식품 리콜 사례 분석

- (미국) '23년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970건으로 자국산(97.8%), 수입산(2.2%)으로 구분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 리콜사례 발생 건수는 3,418건으로 이 중 94.4%가 미국산 제품으로 확인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식품에 발생한 식품 리콜사례는 총 190건으로 멕시코 99건(52.1%), 중국 27건(14.2%), 캐나다 12건(6.3%) 순이며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는 총 9건(4.7%)으로 집계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리콜 사례 발생 사유는 △위생(70%) △라벨링(23.3%) △기타(3.9%)로 확인
- (EU) '23년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935건으로, 자국산(64.1%), 수입산(35.9%)으로 구분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 리콜사례 발생 건수는 2,762건으로 이 중 자국산 리콜 사례가 53.5%(1,478건)로 확인
 - * 동기간 수입산 식품에 발생한 식품 리콜 사례는 총 1,284건으로 튀르키예산 198건(15.4%), 인도산 159건(12.4%), 중국산 92건(7.2%)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산 식품에 부과된 식품 리콜 사례는 13건(1%)으로 상위 18위 수준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리콜 사례 발생 사유는 △성분(49.1%) △위생(30.8%) △라벨링(8.1%)으로 확인
- (일본) '23년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470건으로 자국산(83.8%), 수입산(16.2%)으로 구분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 리콜사례 발생 건수는 1,446건으로 이 중 자국산 리콜이 84%(1,214건)로 확인
 - * 동기간 수입산 식품에 대한 리콜 중 한국산의 리콜이 100건(43.1%)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뒤이어 이탈리아 19건(8.2%), 프랑스 17건(7.3%) 순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리콜 사례 발생 사유는 △라벨링(44.7%) △위생(23%) △성분(11.7%)으로 확인

2. 주요국 식품 리콜제도 분석

- **(미국)** 식품 리콜은 식품의약국(FDA) 및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 검사국(FSIS)이 관할하며 위험성에 따라 리콜 등급을 구분
 - *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육류 △가금류 △난류(가공) 제품의 리콜을 관할하며 식품의약국(FDA)은 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리콜을 담당
 - * 리콜 등급은 **(1등급)** 제품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등급)** 제품이 건강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등급)** 제품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분류
 - * 식품의약국(FDA)은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을 권장하나 기업의 불응 시 의무적 리콜(Mandatory Recall) 명령하며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역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자발적인 리콜 제도를 시행
- **(EU)** 식품법(EC No 178/2002)을 통해 리콜이 필요한 상황 및 제품을 규정,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된 제품은 출시·유통될 수 없음
 - * 유럽연합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정보가 공유
 - * 이와 더불어 국가별 리콜을 담당하는 기관 및 규제 법안이 존재하며,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은 농업식량주권부(MASA)가, 독일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은 각 연방주의 식품안전기관 및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관할
 - * 프랑스, 독일에서는 기업에 자발적인 식품 리콜을 권장하며 기업의 불응 시 당국이 직접 리콜을 시행하여 제품의 압수, 회수, 판매 중지 및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함
- **(일본)** 일반식품 리콜은 지역 보건기관 및 후생노동성(MHLW)이, 건강 및 기능성 식품의 리콜은 일본 소비자청(CAA)이 관할
 - * 일본 당국은 제품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나 주로 자발적인 식품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기업은 자발적 리콜 시행 시 이를 의무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고해야 함

I. 주요국 식품 리콜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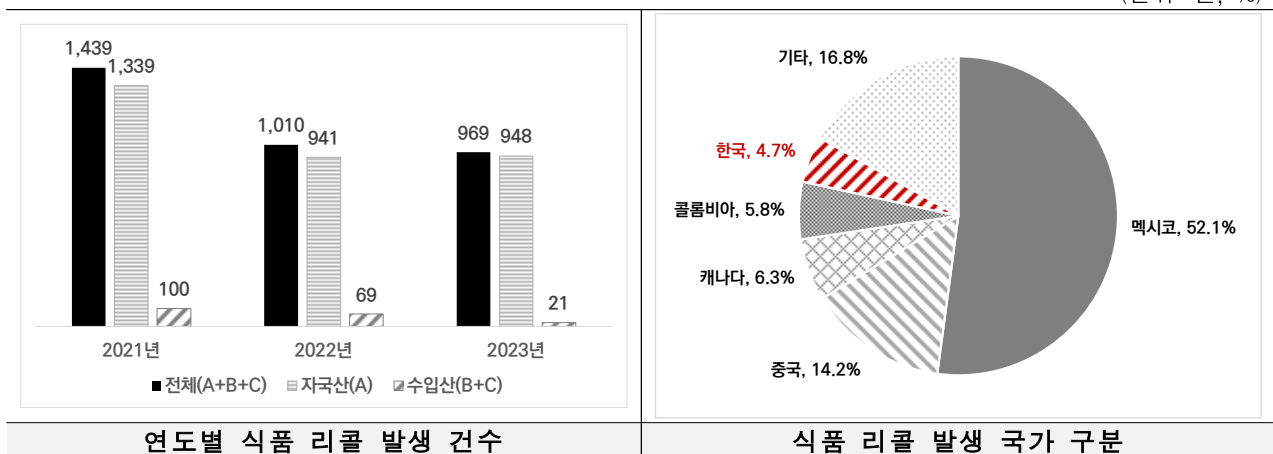
1. 미국

□ 2023년 미국 내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969건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

- 2023년 발생한 식품 리콜 사례 중 자국산 식품에 대한 리콜이 948건으로 전체의 97.8%에 달하며, 수입산 식품 리콜은 총 21건으로 전체의 2.2% 수준
 - 2023년 한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집계되지 않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총 3,418건으로 미국산(94.4%)과 수입산(5.6%)으로 구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식품의 리콜은 △멕시코(99건, 52.1%) △중국(27건, 14.2%) △캐나다(12건, 6.3%) 순으로 집계
 - 동기간 한국산 식품에 대한 리콜은 총 9건(4.7%)으로 나타나며, 2021년 6건, 2022년 3건으로 구분

<그림 I-1> 미국 연도별 식품 리콜 발생 현황 및 국가 구분(2021~20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 (<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 이후 미국의 식품 리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체(자국산+수입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이후 연평균 17.9% 감소
 - 자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1,339건에서 연평균 15.9% 감소하였으며, 수입산(경쟁국산+한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연평균 32.3% 감소하는 추세

<표 1-1> 미국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증감률	
전체(A+B+C)	3,418	1,439	1,010	969	100.0	-41	-4.1	-17.9
자국산(A)	3,228	1,339	941	948	97.8	7	0.7	-15.9
수입산(B+C)	190	100	69	21	2.2	-48	-69.6	-32.3
경쟁국산(B)	181	94	66	21	2.2	-45	-68.2	-52.7
한국산(C)	9	6	3	0	0.0	-3	-100.0	-100.0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위생 및 △라벨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

- 위생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리콜된 사례가 총 2,391건 (70.0%)에 달하며, 라벨링 기준치 위반으로 인한 사례는 765건(23.3%)으로 분류
 - 뒤이어 △비위생적 제조(133건, 3.9%) △성분 기준치 위반(45건, 1.3%) △포장(2건, 0.1%) 순으로 리콜 발생
 - ‘기타 사유’로 리콜된 사례는 총 52건(1.5%)으로, 주로 질식 위험이나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2> 미국 사유별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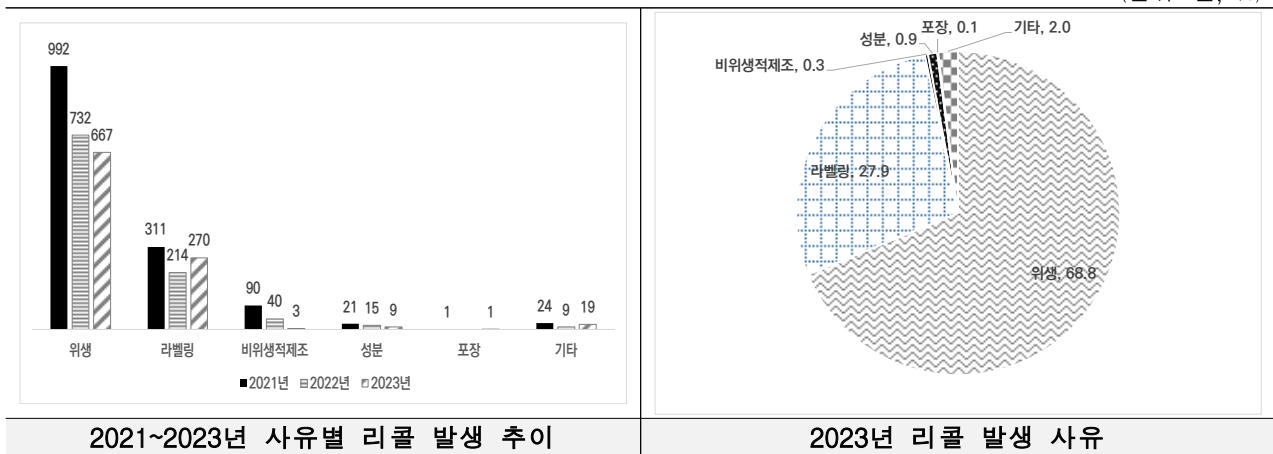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전체	3,418	100.0	1,439	1,010	969	-41	-4.1	-17.9
1 위생	2,391	70.0	992	732	667	-65	-8.9	-18.0
2 라벨링	795	23.3	311	214	270	56	26.2	-6.8
3 비위생적제조	133	3.9	90	40	3	-37	-92.5	-81.7
4 성분	45	1.3	21	15	9	-6	-40.0	-34.5
5 포장	2	0.1	1	0	1	1	N/A	0.0
6 기타	52	1.5	24	9	19	10	111.1	-11.0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그림 1-2> 미국 식품 리콜 발생 사유별 추이('21~'23) 및 비중('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 9건은 모두 ‘위생 기준치 위반’에 따른 것으로 확인

- 2021년 발생한 식품 리콜 1건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식품 리콜 8건은 리스테리아균의 △감염 △검출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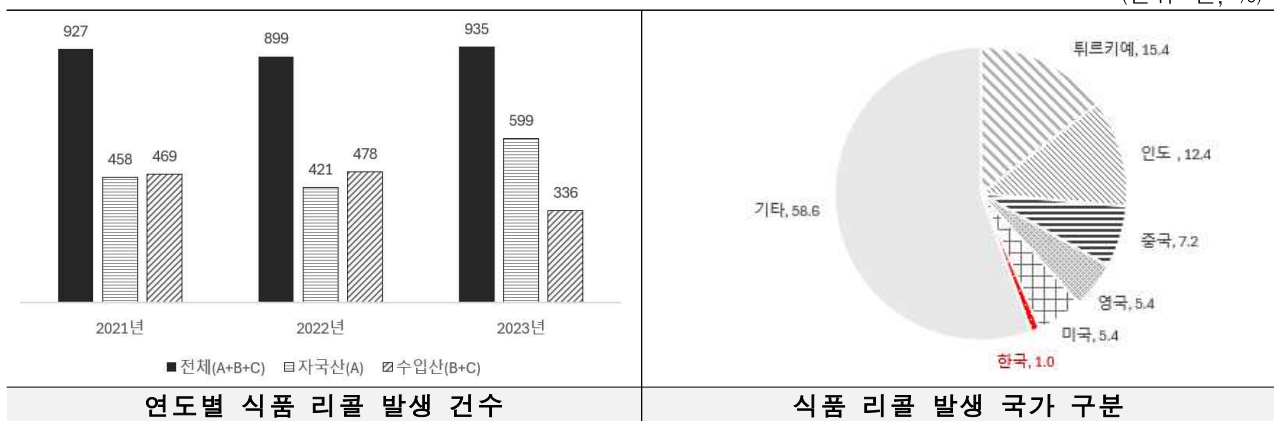
2. 유럽연합(EU)

□ 2023년 유럽연합 내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935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 2023년 발생한 식품 리콜 사례 중 자국산(유럽연합산) 식품에 대한 리콜이 599건으로 전체의 64.1%에 달하며, 수입산 식품 리콜은 총 336건으로 전체의 35.9% 수준
 - 2023년 한국산 식품 리콜은 5건으로 전체의 0.5% 수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총 2,762건으로 유럽연합산(53.5%)과 수입산(46.5%)으로 구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식품의 리콜은 △튀르키예(198건, 15.4%) △인도(159건, 12.4%) △중국(92건, 7.2%) 순으로 집계
 - 동기간 한국산 식품에 대한 리콜은 총 13건(1%)으로 나타나며,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구분

<그림 1-3> 유럽연합 연도별 식품 리콜 발생 현황 및 국가 구분(2021~20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 이후 유럽연합의 식품 리콜은 증가하는 추세
 - 전체(자국산+수입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이후 연평균 0.4%로 증가
 - 자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458건에서 연평균 14.4% 증가
 - 반면 수입산(경쟁국산+한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1,283건에서 연평균 15.4% 감소하는 추세

<표 1-3> 유럽연합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증감률	
전체(A+B+C)	2,761	927	899	935	100.0	36	4.0	0.4
자국산(A)	1,478	458	421	599	64.1	178	42.3	14.4
수입산(B+C)	1,283	469	478	336	35.9	-142	-29.7	-15.4
경쟁국산(B)	1,270	465	474	331	35.4	-143	-30.2	-15.6
한국산(C)	13	4	4	5	0.5	1	25.0	11.8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성분 △위생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

- 성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리콜된 사례가 총 1,355건 (49.1%)에 달하며, 위생 기준치 위반으로 인한 사례는 852건 (30.9%)으로 분류
 - 뒤이어 △라벨링(224건, 8.1%) △비위생적 제조(149건, 5.4%) △서류 미비(20건, 0.7%) △포장(17건, 0.6%) 순으로 리콜 발생
 - ‘기타 사유’로 리콜된 사례는 총 144건(5.4%)으로 주로 온도관리 불량과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유럽연합 사유별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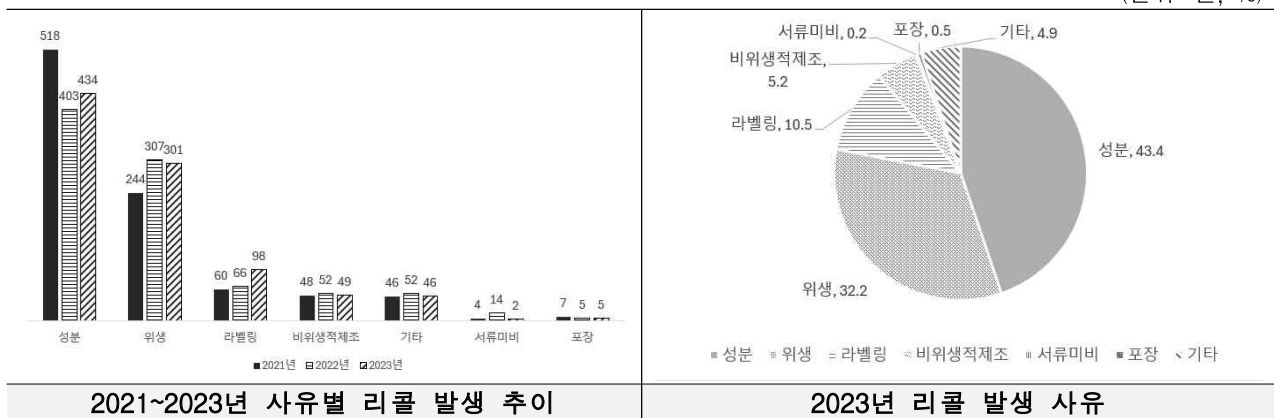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전체		2,761	100.0	927	899	935	36	4.0	0.4
1	성분	1,355	49.1	518	403	434	31	7.7	-8.5
2	위생	852	30.9	244	307	301	-6	-2.0	11.1
3	라벨링	224	8.1	60	66	98	32	48.5	27.8
4	비위생적제조	149	5.4	48	52	49	-3	-5.8	1.0
5	서류미비	20	0.7	4	14	2	-12	-85.7	-29.3
6	포장	17	0.6	7	5	5	0	0.0	-15.5
7	기타	144	5.2	46	52	46	-6	-11.5	0.0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그림 1-4> 유럽연합 식품 리콜 발생 사유별 추이('21~'23) 및 비중('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한국산 식품 리콜은 ‘성분 기준치 불충족’에 따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 성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총 9건으로 전체 한국산 식품 리콜 사례의 69.2% 차지
 - 성분 기준치 위반 9건 중 요오드 고함량 검출이 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클로로에탄올(3건), 수은(1건), 에틸렌옥사이드(1건) 검출 순으로 집계
- 이 외에도 △서류 미비(1건, 7.7%) △위생(1건, 7.7%) △기타(2건, 15.4%) 순으로 리콜 발생
 - ‘서류미비’로 인한 식품 리콜은 위생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생 기준치 위반’으로 인한 식품 리콜은 유해 미생물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남
 - 기타 사유로 발생한 리콜 사례 2건 중 1건은 수의학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1건은 제품의 온도관리가 불량했기 때문에 리콜된 것으로 확인

<표 1-5> 사유별 유럽연합 내 한국산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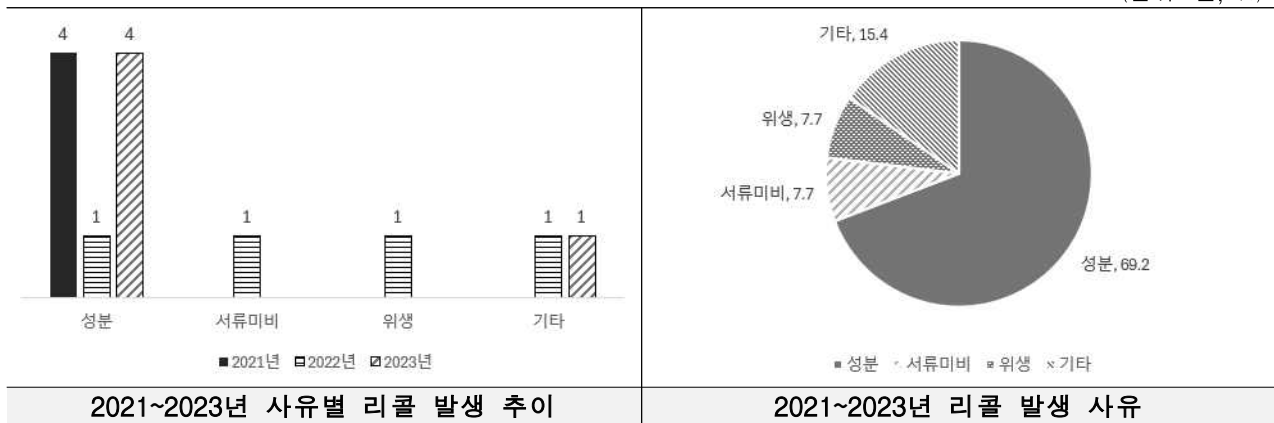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전체		13	100.0	4	4	5	1	0.25	11.8
1	성분	9	69.2	4	1	4	3	3	0.0
2	서류미비	1	7.7	0	1	0	-1	-1	N/A
3	위생	1	7.7	0	1	0	-1	-1	N/A
4	기타	2	15.4	0	1	1	0	0	N/A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그림 1-5> 유럽연합 내 한국산 식품 리콜 발생 사유별 추이 및 비중('21~'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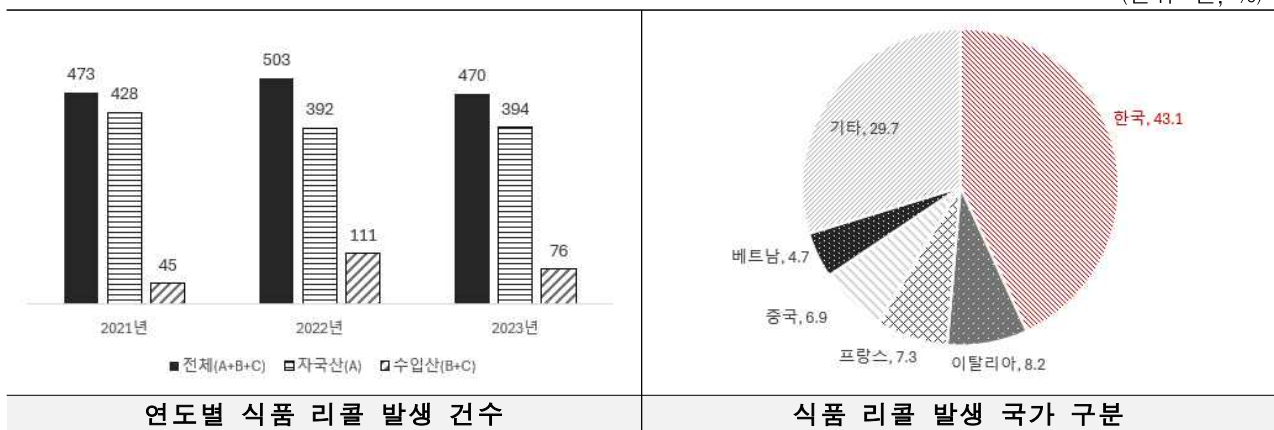
3. 일본

□ 2023년 일본 내 식품 리콜 발생 건수는 470건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

- 2023년 발생한 식품 리콜 사례 중 자국산 식품에 대한 리콜이 394건으로 전체의 83.8%에 달하며, 수입산 식품 리콜은 총 76건으로 전체의 16.2% 수준
 - 2023년 한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38건으로 전체의 8.1% 수준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총 1,446건으로 자국산(83.8%)과 수입산(16.2%)으로 구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식품의 리콜은 △한국(100건, 43.1%) △이탈리아(19건, 8.2%) △프랑스(17건, 7.3%) 순으로 집계

<그림 1-6> 일본 연도별 식품 리콜 발생 현황 및 국가 구분(2021~20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 (<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 (검색일: 2024.11.20.)

- 2021년 이후 일본의 식품 리콜은 감소하는 추세
 - 전체(자국산+수입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이후 연평균 0.3% 감소
 - 자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428건에서 연평균 4.1% 감소
 - 반면 수입산(경쟁국산+한국산) 식품 리콜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연평균 30% 증가

<표 1-6> 일본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증감률	
전체(A+B+C)	1,446	473	503	470	100.0	-33	-6.6	-0.3
자국산(A)	1,214	428	392	394	83.8	2	0.5	-4.1
수입산(B+C)	232	45	111	76	16.2	-35	-31.5	30.0
경쟁국산(B)	132	37	57	38	8.1	-19	-33.3	1.3
한국산(C)	100	8	54	38	8.1	-16	-29.6	117.9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품 리콜은 △라벨링 및 △위생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

- 라벨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리콜된 사례가 총 646건(44.7%)에 달하며, 위생 기준치 위반으로 인한 사례는 332건(23%)으로 분류
 - 뒤이어 △성분(169건, 11.7%) △비위생적 제조(131건, 9.1%) △포장(40건, 2.8%) 순으로 리콜 발생
 - 기타 사유로 리콜된 사례는 총 128건(8.9%)으로 주로 제품의 보관 및 판매 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일본 사유별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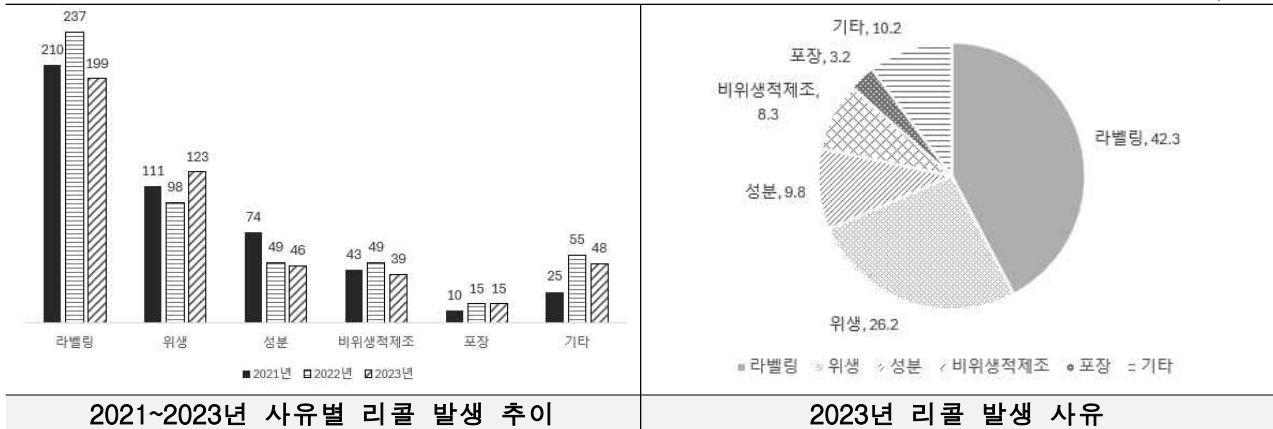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전체		1,446	100.0	473	503	470	-33	-6.6	-0.3
1	라벨링	646	44.7	210	237	199	-38	-16.0	-2.7
2	위생	332	23.0	111	98	123	25	25.5	5.3
3	성분	169	11.7	74	49	46	-3	-6.1	-21.2
4	비위생적제조	131	9.1	43	49	39	-10	-20.4	-4.8
5	포장	40	2.8	10	15	15	0	0.0	22.5
6	기타	128	8.9	25	55	48	-7	-12.7	38.6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그림 1-7> 일본 식품 리콜 발생 사유별 추이('21~'23) 및 비중('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한국산 식품 리콜은 △라벨링 및 △성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

- 라벨링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된 사례는 총 85건으로 전체 한국 식품 리콜 사례의 85%를 차지
 - 라벨링 기준치 위반은 주로 △일본어 라벨링 표기 누락(48건) △알레르기 항원 미표시(32건) △필수 표기사항 누락(5건)에 따른 것으로 확인
- 성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리콜된 사례는 9건(9%)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성분 기준치 위반은 주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6건) △잔류농약 검출(3건)에 따른 것으로 확인
- 이 외에도 △위생(3건, 3%) △비위생적 제조(2건, 2%) △기타(1건, 1%) 등의 이유로 리콜 발생
 - 위생 기준치 위반은 대장균 검출(2건), 장염 비브리오균 검출(1건)로 확인

<표 1-8> 사유별 일본 내 한국산 식품 리콜 발생현황(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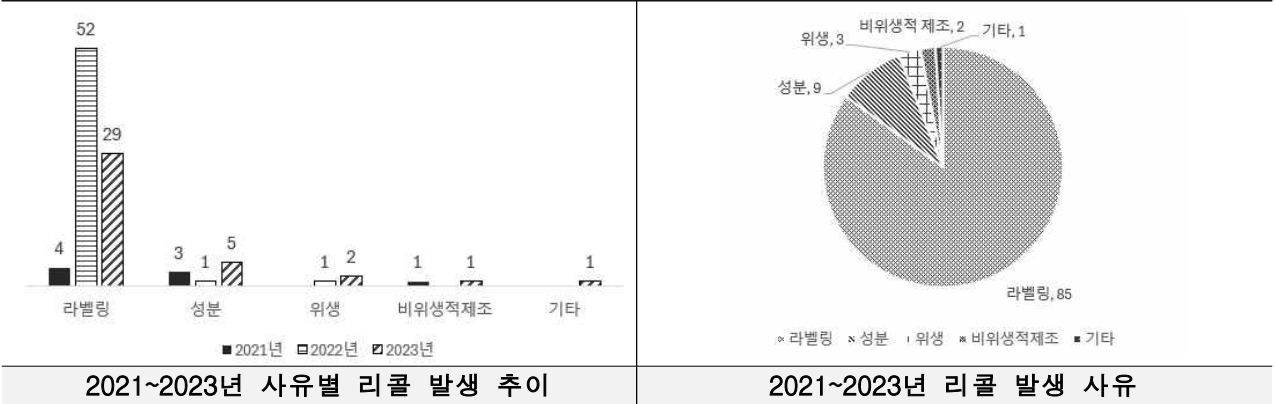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3개년 합계		2021	2022	2023	전년비(22/23)		연평균 (21/23)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전체	100	100.0	8	54	38	-16	-29.6	117.9
1 라벨링	85	85.0	4	52	29	-23	-44.2	169.3
2 성분	9	9.0	3	1	5	4	400.0	29.1
3 위생	3	3.0	0	1	2	1	100.0	N/A
4 비위생적제조	2	2.0	1	0	1	1	N/A	0.0
5 기타	1	1.0	0	0	1	1	N/A	N/A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그림 1-8> 일본 내 한국산 식품 리콜 발생 사유별 추이 및 비중('21~'23)

(단위: 건, %)



*출처: KATI 통관문제 사례(<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검색일:2024.11.20.)

II. 주요국 식품 리콜제도 분석

1. 미국

가. 유관기관 및 근거 규정

□ 미국의 식품 리콜은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및 식품의약국(FDA)에서 관할

-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관할 품목은 △육류 △가금류 △난류(가공) 제품에 한함
- 식품의약국(FDA)은 육류, 가금류, 난류(가공)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리콜을 담당

□ 미국 내 식품 리콜은 연방규정(CFR Title 21, part 7) 및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해 규정

- (연방규정) 식품 리콜의 △필요성 △대상 제품의 위험성 평가 △절차 △유형을 명시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리콜 대상 제품을 판별하기 위한 부정 식품 및 부정 표시 식품(Misbranded Food) 요건을 명시
 - 식품의약국(FDA) 및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동 법안에 명시된 부정 식품과 부정 표시 식품을 리콜 대상 제품으로 분류

<표 II-1>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명시된 부정 식품 및 부정 표시 식품 요건

구분	세부내용
부정 식품 (Adulterated Food)	- 유독·유해 물질 및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 - 성분의 누락·대체·추가로 인해 제품의 품질 및 중량이 영향받은 제품 - 안전하지 못한 식용 색소를 사용한 제품 - 알코올 또는 비영양(Nonnutritive) 성분을 포함한 스낵 제품 - 비위생적이고 부패한 물질을 사용한 올레오마가린(Oleomargarine) 제품 - 안전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 우수제조관행(GMP)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산·포장·보관된 식이보충제 - 미국에 수입이 제재된 제품, 이전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운송된 제품
부정 표시 식품 (Misbranded Food)	- 허위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라벨 - 다른 식품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 - 다른 식품을 모방한(Imitation)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식품 용기를 사용한 제품 - 포장재에 제조·포장·유통 업체의 이름 및 주소, 내용물의 중량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 - 라벨에 기재된 정보의 가독성이 낮은 제품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체성 표준(Standard of Identity) 표시 제품 - 제품의 품질 및 충전량(Fill of Container)이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정체성 표준 표시를 누락한 제품 - 허용되지 않은 특수식이용 식품 표시 - 인공 향료, 착색료, 방부제의 사용을 명시하지 않은 제품 - 농약, 살충제 등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제품

*출처: 미국 정부 법률 정보 웹사이트(<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IV-sec342.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21/html/USCODE-2011-title21-chap9-subchapIV-sec343.htm>)(검색일: 2024.11.19.)

-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연방육류조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 가금육조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 난류제품조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EPIA)에 따라 리콜을 진행
 - 위 법안에 명시된 위생 및 라벨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오염·변질되거나 적합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육류, 가금육, 난류 제품은 시장에서 회수(리콜)되고 폐기되어야 함

나. 리콜 제도 분석

□ 美식품의약국(FDA) 및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리콜 유형을 3가지 등급으로 구분

- 식품의약국과 식품안전검사국은 사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관련 연방 및 주(州) 식품·보건 기관의 제보를 통해 리콜이 필요한 제품을 파악
- 식품의약국은 과학 위원회를 개최해 각 리콜 제품의 리콜 등급을 판별

<표 II-2>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리콜 등급 판별 기준

1	해당 식품의 섭취로 인한 부상 및 질병 발생 여부
2	해당 식품 섭취 시 기저질환 보유 소비자의 질병 발생 가능성
3	해당 식품 섭취가 노년층, 유아, 환자, 동물 등 다양한 소비자 및 생물에 끼치는 위험성
4	해당 식품 섭취가 위험군에 속한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험성
5	해당 식품 섭취의 단기 및 장기적 영향
6	해당 식품 섭취 시 위험 발생 가능성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https://www.fda.gov/safety/industry-guidance-recalls/recalls-background-and-definitions#:~:text=Recalls%20are%20actions%20taken%20by,would%20be%20a%20market%20withdrawal.>)(검색일: 2024.11.19.)

- 제품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일 위급한 등급인 1등급으로 구분되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제품은 2등급, 3등급 순으로 분류

<표 II-2> 제품 위험성에 따른 리콜 등급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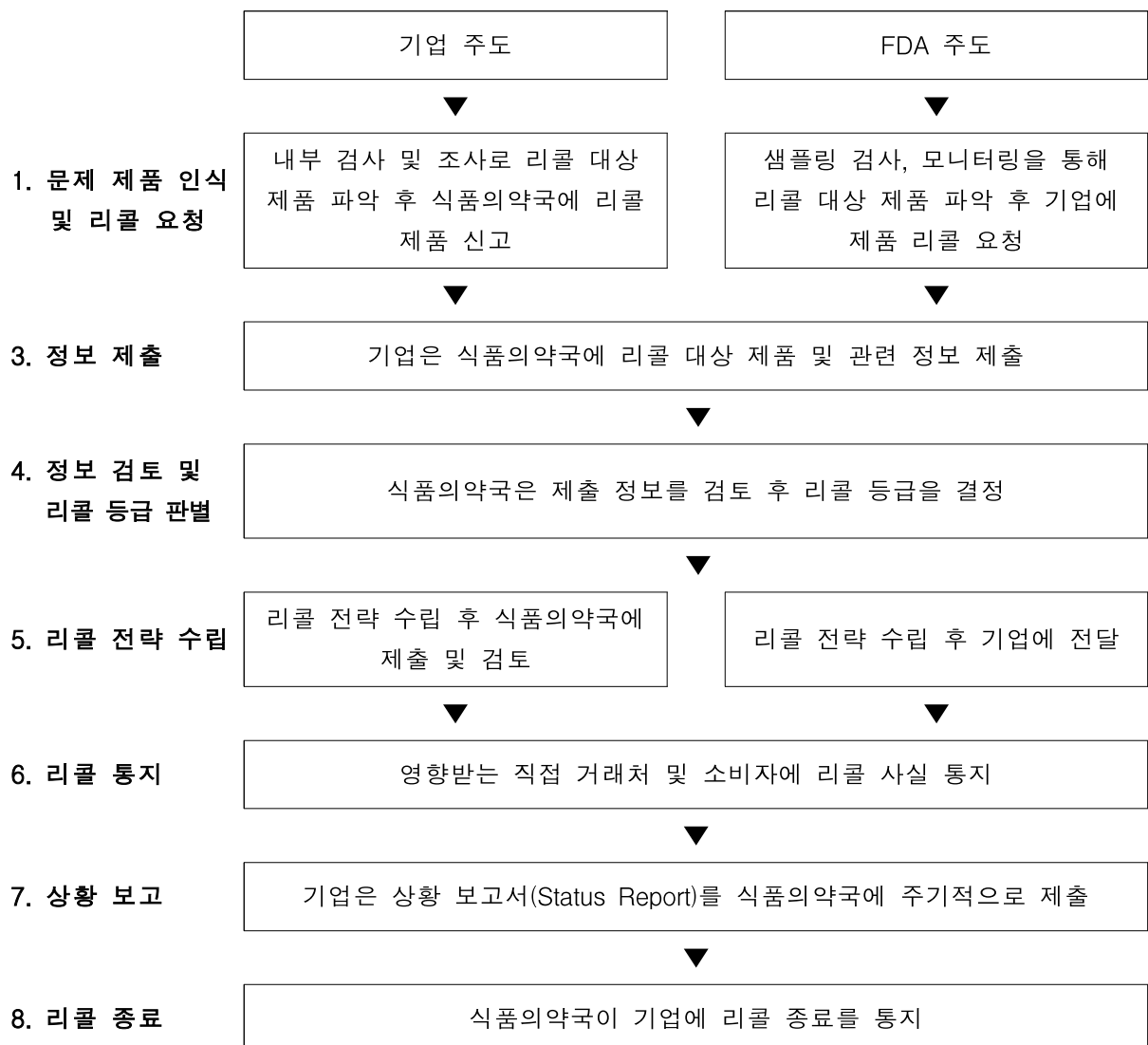
1등급 (Class I)	위반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2등급 (Class II)	위반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건강에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등급 (Class III)	위반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https://www.fda.gov/safety/industry-guidance-recalls/recalls-background-and-definitions#:~:text=Recalls%20are%20actions%20taken%20by,would%20be%20a%20market%20withdrawal.>)(검색일: 2024.11.19.)

□ 美식품의약국(FDA)은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을 권장하며,
불응 시 의무적 리콜(Mandatory Recall) 명령

- 자발적 리콜 절차는 △기업 주도과 △식품의약국 주도의 리콜로 구분
 - (기업 주도 리콜) 기업이 리콜 제품을 식별하고 직접 리콜 전략을 수립
 - (식품의약국 주도 리콜) 식품의약국이 당국 조사 결과를 통해 리콜 제품을 식별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을 요청하며, 기업이 수락 시 리콜 제품의 위험성 및 등급을 고려한 리콜 전략을 수립 후 기업에 전달

<그림 II-1> 美식품의약국(FDA) 리콜 절차



- (1단계) 기업은 자체적으로 문제 제품을 파악해 당국에 리콜 제품을 신고하며, 식품의약국은 문제 제품을 파악 후 기업에 리콜 요청
 - 식품의약국 주도 리콜은 샘플링 검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의 위험이 있는 제품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시행 거부 △공공복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제품을 인식한 경우에 기업에 리콜을 요청
- (2단계) 기업은 리콜 개시를 위해 당국이 요구하는 제품 관련 정보를 제출
 - 기업은 △해당 제품 정보 △리콜 사유와 그 발견일 및 발견 과정 △제품의 위험성 △리콜 통지서의 사본 또는 계획안 △제품의 총생산량 및 생산 기간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양 △직접 거래처(Direct Accounts)의 정보를 포함한 유통 정보 △리콜 진행 계획 △기업 내 리콜 담당자 정보를 식품의약국에 제출
- (3단계) 식품의약국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리콜 등급을 결정
- (4단계) 리콜 등급 결정 후 리콜 전략(Recall Strategy) 수립
 - 식품의약국 주도 리콜의 경우 당국이 직접 리콜 전략을 작성하며, 기업 주도 리콜의 경우 기업이 리콜 전략을 개발한 뒤 당국의 검토를 거침
 - 리콜 전략은 △리콜 등급 △제품의 식별성 △제품 결함의 명백함 △유통 중인 미사용 제품 비중 △필수 제품의 공급 지속성을 고려해 수립하며, △리콜 범위 △공공 경고(Public Warning) △효과 점검(Effectiveness Checks)의 요소를 포함

<표 II-3> 리콜 전략 요소

구분	세부내용
리콜 범위 (Depth of recall)	제품의 위험도와 유통 범위에 따라 리콜이 이루어질 유통망 단계를 지정 - 도·소매 유통채널을 포함한 소비자 또는 사용자 단계 - 도매 유통채널을 포함한 소매 유통채널 단계 - 도매 유통채널 단계
공공 경고 (Public Notification)	- 공공경고는 제품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끼치며 시급히 리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발행 - 기업이 공공 경고를 게시할 경우 경고안과 통지 계획을 식품의약국에 제출 - 공공 경고는 대중매체 또는 전문 매체(Specialized News Media)를 통해 통지되며 식품의약국 홈페이지 및 주간 보고서에도 게재
효과 점검 (Effectiveness Checks)	- 효과 점검은 리콜 범위 내 모든 대상(Consignees)이 리콜 통지를 수령하고 제품을 적합하게 처리했는지 확인 - 모든 리콜 대상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방문 △전화 △우편 등의 수단 사용 - 효과 점검은 리콜 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5가지 단계로 구분 · A 단계: 모든(100%) 리콜 대상에게 성공적으로 연락 · B 단계: 일부(10% 이상, 100% 이하) 리콜 대상에게 성공적으로 연락 · C 단계: 10%의 리콜 대상에게 성공적으로 연락 · D 단계: 2%의 리콜 대상에게 성공적으로 연락 · E 단계: 효과 점검 미시행

*출처: 미국 연방법 Title 21(<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A/part-7/subpart-C>)(검색일: 2024.11.19.)

○ **(6단계) 기업은 리콜에 영향을 받는 직접 거래처(Direct Accounts)에 리콜 사실을 통지**

- 기업은 직접 거래처에 ‘제품이 리콜되어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중단해야 함’을 알리고 리콜된 제품의 처리 방식 또한 공유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직접 거래처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
 - 리콜 통지(Recall Communications)는 전보, 메일그램(Mailgram), 일반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일반 우편의 경우 우편 봉투에 ‘식품 리콜(Food Recall)’을 붉은색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1, 2등급 리콜의 경우 ‘긴급(Urgent)’을 표시
 - 이는 전화 및 인편과 병행될 수 있으며 모든 리콜 통지는 문서로 기록

- 리콜 통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기업은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리콜 사유 및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품명, 크기, 로트 번호(Lot Number), 코드 및 시리얼 번호 등 리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회수(리콜)된 제품의 상세한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하며 리콜 기업과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함
 - 리콜 통지는 홍보성 정보를 비롯한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 (7단계) 기업은 리콜을 진행하며 상황 보고서(Status Report)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상황보고서는 해당하는 식품의약품의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에 제출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2~4주의 간격으로 제출이 요구됨
 - 리콜 상황 보고서는 △리콜 통지 대상자의 수 △회수된 제품의 수와 양 △리콜 완료 예상 시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표 II-4> 리콜 상황 보고서 구성 요소

1	리콜 통지 대상자의 수, 일자 및 방식
2	리콜 통지에 응답한 대상자의 수 및 통지 시점에 보유한 제품의 양
3	리콜 통지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의 수
4	각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제품의 수와 양
5	효과 점검(effectiveness check)의 횟수와 결과
6	리콜 완료 예상 시점

*출처: 미국 연방법 Title 21(<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A/part-7/subpart-C>)(검색일: 2024.11.19.)

- (8단계) 제품의 회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은 기업에 리콜 종료를 통지
- 기업이 자발적 리콜에 불응하여 ‘의무적 리콜’이 시행될 경우 식품의약품은 보도자료 및 공공 경고를 통해 리콜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

□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육류 및 가공육 제품의 자발적인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기업은 제품의 오염 또는 라벨링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식품안전검사국에 통지해야 함
- 식품안전검사국은 부적합 제품 식별 후 예비 조사를 통해 리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

<표 II-5> 美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자발적 리콜 절차

단계	세부내용
1. 문제 파악	-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식품안전검사국의 샘플링 검사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민원 △보건기관의 병리학적 또는 과학적 조사 결과 △식품의약국 및 농무부 등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 문제 제품을 파악
2. 예비 조사	- 식품안전검사국의 담당자가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품 정보: 리콜 사유, 브랜드 및 제품명, 포장재, 포장재 코드, 생산 및 포장일자, 생산량, 보관량, 유통량, 유통 지역 및 단계, 라벨 및 포장재의 사진, 관련 발생 사건 수, 급식 사용 여부, 미국국방부 납품 여부, 온라인 판매 여부
3. 리콜 검토	-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식품안전검사국은 책임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도록 요청
4. 리콜 통지 및 진행	- 자발적인 리콜 진행 시 식품안전검사국이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식품 기업은 제품의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제품의 리콜 사실을 통지 - 식품안전검사국에 제품을 판매한 소매 유통채널 정보를 제공 - 리콜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효과 점검(effectiveness check)을 진행
5. 리콜 종료	- 기업은 △소비자 목록 △회수 제품의 양 △조치 △회수 제품의 폐기 정보를 기재한 종료 메모(closeout memo)를 식품안전검사국에 제출 - 식품안전검사국은 종료 메모를 접수한 후 리콜을 종료

*출처: 미국 농무부 리콜 절차 가이드(https://www.fsi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_file/2020-08/Recall-Presentation-012018.pdf)(검색일: 2024.11.19.)

- 자발적인 리콜 거부 시 식품안전검사국은 공공 보건 경고(Public Health Alert)를 발표하고 제품의 압수 및 압류를 진행
 - 유통 중인 제품은 압수 및 압류되며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를 통해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됨

□ 미국 내 발생한 리콜 사례는 식품의약국(FDA) 및 식품안전 검사국(FSIS) 웹사이트에 게시

<그림 II-2> 미국 식품의약국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DA's Recalls, Market Withdrawals, & Safety Alerts website. The main heading is "Recalls, Market Withdrawals, & Safety Alerts". Below this, there is a search bar and filters for "Product Type" and "Terminated Recall". A list of recalls is shown, with one specific recall highlighted: "F&S Fresh Foods Recalls Whole Foods Market Organic Carrot Sticks and Organic Carrots & Celery Because of Possible Health Risk Due to Potential E. coli Contamination". The highlighted recall includes details such as the company name, product type, and a summary of the recall.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https://www.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검색일:2024.11.22)

<그림 II-3>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SIS's Recalls & Public Health Alerts website. The main heading is "Recalls & Public Health Alerts". Below this, there is a search bar and filters for "Cause". A list of recalls is shown, with one specific recall highlighted: "Wolverine Packing Co. Recalls Ground Beef Products Due to Possible E. Coli O157:H7 Contamination". The highlighted recall includes details such as the company name, product type, and a summary of the recall.

*출처: 미국 식품안전검사국(<https://www.fsis.usda.gov/recalls>)(검색일:2024.11.22)

다. 주요 리콜 사례

□ 미국에서는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식품 리콜 사례가 발생

- (위생) 2024년 7월 미국 육가공업체 Boar's Head는 리스테리아 균 오염 우려로 제품 리콜을 개시
 - 메릴랜드주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에서 시행한 샘플링 검사에서 Boar's Head의 소시지 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스균이 검출되며 기업이 리콜을 개시
 - Boar's Head는 문제 제품이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해당 시설에서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가공육 제품을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
 -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해당 리콜을 1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웹사이트에 리콜 대상 제품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제품 번호 등을 게재해 소비자가 리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소매업체에는 제품을 폐기 또는 반품하도록 권장
 - 2024년 9월 미국 매체 CNN의 보도에 따르면 Boar's Head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중 59명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입원했으며, 이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4> 리콜된 Boar's Head의 가공육 제품



*출처: <https://www.kroger.com/>

- (라벨링) 2024년 8월 알레르기 항원을 표시하지 않은 스낵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 리콜 통보됨
 - Bliss Tree에서 생산한 스낵류 중 주요 알레르기 항원인 우유 및 참깨의 함유 사실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총 9종이 리콜 대상으로 선정
 - 식품의약국은 조사 결과 제품 포장 과정에서의 오류로 알레르기 항원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이 중단되었다고 발표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식품의약국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환불받을 것을 권고

<표 II-6> 리콜된 Bliss Tree 스낵 제품

제 품			
제 품 명	Ragi Butter Murukku	Millet Butter Ribbon Pakoda	Millet Butter Murukku
리 콜 유 형	자발적 리콜		
리 콜 사 유	알레르기 항원 유제품 미표기		알레르기 항원 유제품 및 참깨 미표기
리 콜 등 급	2등급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https://www.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sri-lakshmi-narasimhar-overseas-llc-issues-allergy-alert-undeclared-milk-and-sesame-seeds-bliss-tree>)(검색일: 2024.11.25.)

- (비위생적 제조) Wehah Farms는 자사 잡곡 쌀 제품에 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
 - Wehah Farms는 제품에 설치류에서 유래한 이물질의 검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약 2만 7,000개의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힘
 - 식품의약국은 해당 리콜을 2단계로 분류했으며, 홈페이지에 제품의 로트 (Lot) 번호, 유통기한, UPC(Universal Product Code) 번호를 공지해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표 II-7>리콜된 킨더 서프라이즈 제품

	제 품 명	Lundberg Family Farms Sustainable Wild Blend Gourmet Rice
	리콜 유형	자발적 리콜
	리콜 사유	이물질 검출
	리콜 등급	2등급

*출처: FDA elevates recall in 7 states of California farm's rice, which may contain foreign 'rodent' object, The Sacramento Bee(2024.07.20.)

- (성분) 2023년 11월 WanaBana USA는 높은 납 함유량이 검출된 사과 소스 제품의 리콜을 발표
 - 해당 제품은 계피가 함유된 영유아용 사과 소스 파우치로 실제 섭취한 소비자 중 4건의 납중독 사례가 발생
 - 식품의약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배치 (Batch) 번호를 게시하였으며, 납중독 사례가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와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조사함

2. 유럽연합(EU)

가. 유관기관 및 근거규정

□ 유럽연합은 식품법(EC) No 178/2002)을 통해 리콜 및 회수가 필요한 상황 및 제품을 규정

- 기업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수입·가공·유통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업은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유럽 연합 및 회원국의 유관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리콜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리콜 사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포장하지 않은 유통 기업은 리콜 절차에 필요한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회수에 협력해야 함
- 규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유통될 수 없음
 -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는 일반적인 소비·생산·가공·유통 조건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정보를 고려하며, 건강에 해롭거나 사람이 섭취하기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판단하는 경우 섭취로 인한 단·장기적 영향 및 후대에 끼치는 영향과 누적 독성 영향을 고려하며, 특정 소비자층이 섭취하는 제품은 해당 소비자층의 건강 민감성(Health Sensitivities)도 고려함
 -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이물질로 인한 오염, 부패, 변질 정도를 고려함
 - 안전하지 못한 식품으로 판별된 제품과 동일한 배치(Batch), 로트(Lot)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함께 배송된 제품은 별다른 증명 자료가 없을 경우 모두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간주

□ 유럽연합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정보가 공유됨

- 유럽연합 회원국은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을 통해 식품·보건기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공유
 - 정보를 공유받은 회원국은 리콜, 제품 회수, 공공 경고 발행 등 적합한 대응 및 조치를 취함
 - RASFF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식품안전청(EFSA), ESA(The European Surveillance Authority),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참여함
- 회원국이 RASFF에 통지하는 식품 안전 정보 유형은 △경보 통보 △정보 통보 △수입 거부 △RASFF 뉴스로 구분
 - 회원국은 자국 내 리콜 대상 식품을 식별한 후 RASFF에 관련 정보를 동반한 경보 통보를 통지하며, 이를 제공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표 II-8> 유럽연합 RASFF 경보 유형

유형	마크	내용
경보 통보 (RASFF ALERT)		- 건강상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는 식품 또는 사료가 시장에 유통·판매되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될 경우 발행 - 해당 경보 통보를 수신한 회원국은 문제 제품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함
정보 통보 (RASFF INFORMATION)		- 시장에 유통·판매된 식품 및 사료의 위험성 식별되었으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발행
통관 거부 (RASFF BORDER REJECTION)		-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공동체(EEA) 국경에서 적발 및 통관 거부된 문제 제품에 대해 발행 - 해당 제품이 국경을 통과할 수 없도록 관내 모든 국경통제소에 관련 제품 정보를 전달
RASFF 뉴스 (RASFF NEWS)		- 경고 통보, 정보 통보, 통관 거부 알림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 안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시 발행

*출처: 유럽연합 위원회 홈페이지(https://food.ec.europa.eu/food-safety/acn/acn-notifications_en#rasff-notification)(검색일:2024.11.25.)

□ 유럽연합 식품법과 더불어 회원국별 리콜 담당 기관 및 규제 법안이 존재

- (프랑스)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은 농업식량주권부(MASA)가 관할
 - 농업식량주권부 산하 식품총국(DGAL)은 프랑스 정부 및 각 지역의 식품 및 보건기관과 협력해 리콜을 알리는 식품경고(Alerte Alimentaire)를 관리
 - 식품총국(DGAL)은 기업으로부터 리콜 제품의 성분, 원산지, 생산 배치(Batch),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추적성 조사를 수행
 - 또한 리콜 제품이 식별된 후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관련 정보를 공유
- 프랑스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한 기업의 리콜 책임을 명시
 - 동 법은 생산자(기업)가 제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했을 경우 제품의 회수 및 리콜을 진행하도록 함
- (독일) 독일에서 발생하는 식품 리콜은 각 연방주의 식품 안전 기관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관할
 - 연방정부는 기업에게 받은 리콜 정보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 전달하며 BVL은 리콜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 연방정부는 제품이 효과적으로 리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기업이 리콜에 불응할 시 리콜 명령을 통지
- 독일의 식품사료법(LFGB)은 리콜이 필요한 상황을 명시
 - 동 법은 인체에 해로운 제품, 또는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철수 또는 리콜하도록 규정

나. 리콜 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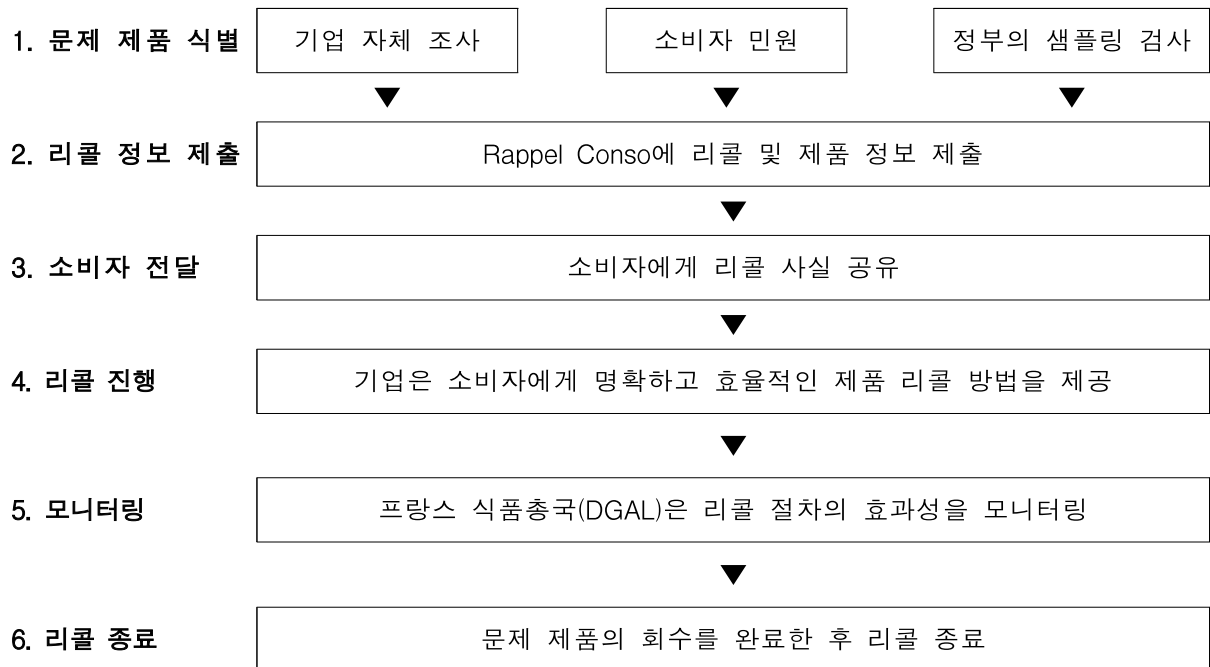
□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의 대응으로 식품 안전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보호 조치를 시행

-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절차로 식품 안전 위험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 식품 △위험이 식품 공급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경우 △위험이 여러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입
 - 당국은 식품 위기관리를 위한 총괄 계획 및 위기 대응 부서를 설립하고 제품의 회수, 사용 중단, 수입 중단 등의 보호 조치를 실행
 - 위기 대응 부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 조치를 대중과 공유하며, RASFF 및 회원국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 역학 정보, 국제기관 및 소비자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총괄 계획을 수립

□ (프랑스) 자발적인 식품 리콜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에 불응할 시 당국이 직접 리콜을 시행

- 식품기업이 자발적인 리콜에 불응하는 경우 당국은 직접 유통 및 관련 기관에 필요 정보를 전달하며 제품의 압수, 회수, 판매 중지 및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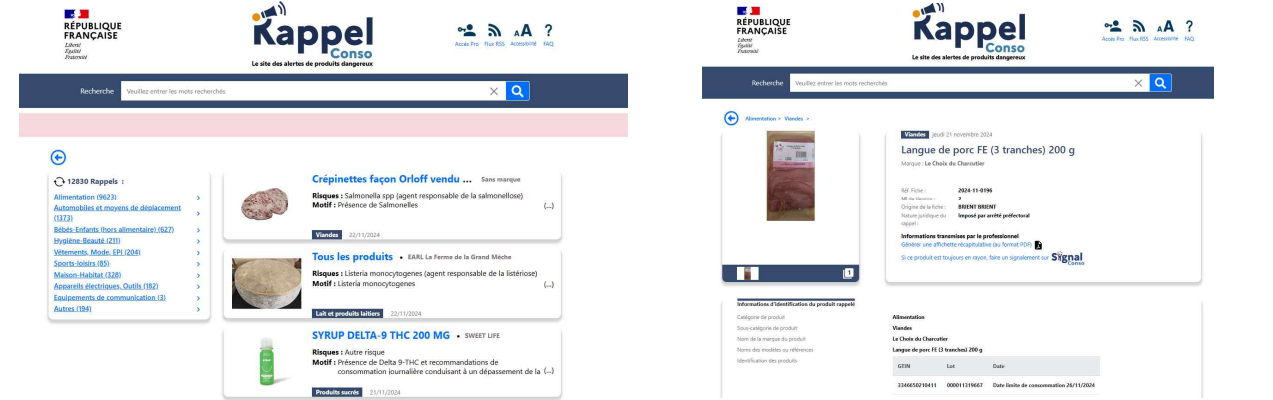
<그림 II-5> 프랑스 리콜 절차



- (1단계) 기업, 소비자, 정부 기관에 의해 리콜 제품이 식별된 후 리콜 절차 개시
 - 기업은 자체적인 내부 조사 결과 또는 소비자의 제보, 정부 기관의 샘플링 검사 결과를 통해 문제 제품을 식별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회수되며, 판매된 제품은 리콜됨
- (2단계) 기업은 리콜 정보를 공표하는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¹⁾’에 리콜 및 제품 정보를 제출하며 당국은 이를 검토 후 게시
 - 기업은 Rappel Conso 계정을 생성해 제품의 △사진 △브랜드 △배치 (Batch) 번호 △유통 업체 및 지역 △리콜 제품의 위험성 및 처리방법 등 필요 정보를 제출

1) 프랑스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rappel.conso.gouv.fr/>)

<그림 II -6> 프랑스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Rappel Conso'



*출처: 프랑스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rappel.conso.gouv.fr/>)

- (3단계) 유통채널 및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 공유
 - 리콜 제품이 유통된 매장 내 눈에 띄도록 리콜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또는 포스터를 게시해야 하며, 신선 식품의 경우 2주, 비신선 식품의 경우 2달 동안 게시
 - 유통 매장은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제품의 리콜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보도자료를 작성해 리콜 사실 발표
- (4단계) 기업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한 리콜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소비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리콜을 진행해야 함
- (5단계) 프랑스 식품총국(DGAL)은 리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함
- (6단계) 기업이 리콜 대상 제품을 회수 완료 후 리콜 종료

□ (독일) 자발적인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 차원의 리콜 명령을 통지

- 식품기업이 자발적인 리콜에 불응하는 경우, 각 연방 주의 식품 안전 기관은 공개적인 경고를 발행하고 리콜을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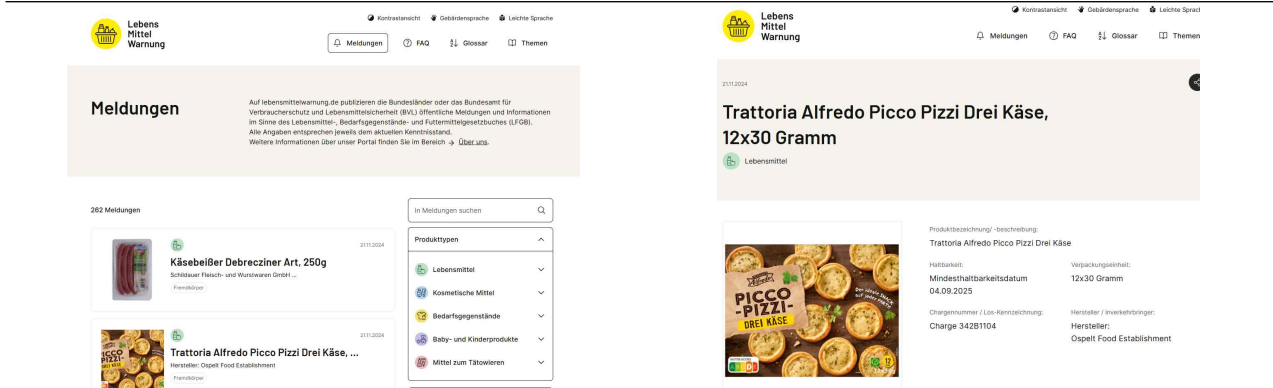
<그림 II-7> 독일 리콜 절차



- **(1단계)** 기업이 문제 제품 식별 후 연방 주와 협력해 리콜 개시
 - 기업은 자체 조사 및 독일 정부 조사를 통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파악하고 해당 주 정부와 협력해 리콜 개시
 - 기업이 문제 제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당국은 벌금을 부과
- **(2단계)** 리콜 정보 웹사이트 'lebens mittel warnung²⁾' 에 제품 리콜 정보 게시
 - 제품명, 기업명, 유통기한, 배치(Batch) 번호, 리콜이 진행되는 연방 주 등 제품 식별을 돕는 정보 게시

2) 독일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www.lebensmittelwarnung.de/DE/Home/home_node.html)

<그림 II-8> 독일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lebens mittel warnung'



*출처: 독일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www.lebensmittelwarnung.de/DE/Home/home_node.html)

- (3단계) 기업은 보도자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리콜 정보 전달
 - 당국은 기업이 리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시 직접 소비자에게 경고를 전달함
 - 독일에서 생산·유통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또는 RASFF 및 유럽연합을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는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이 대중에게 리콜 정보 전달
- (4단계) 연방 주 정부는 제품의 리콜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불시에 리콜 제품의 유통 여부를 검사
- (5단계)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만료 후 리콜 종료
 - 독일 리콜 정보 웹사이트 lebens mittel warnung에 게시된 리콜 정보는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에 삭제되며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의 정보는 1년간 게시 후 삭제

다. 주요 리콜 사례

□ 유럽연합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식품 리콜 사례가 발생

- (위생) 2022년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 초콜릿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제품을 회수(리콜)함
 - 2022년 유럽에서 킨더 서프라이즈(Kinder Surprise) 초콜릿 제품의 섭취로 유럽 9개국에서 150건의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발생
 - 아동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제품 특성상 10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제품을 생산한 벨기에 공장은 벨기에 당국에 의해 가동 중지되었으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킨더 서프라이즈 제품의 리콜이 진행
 - 페레로사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된 킨더 서프라이즈 제품 외에도 킨더 미니 에그, 쇼코봉(Shokobons) 등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리콜)함
 -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의 식품 안전 관할 기관은 제품명, 중량,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공표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페레로사는 추후 생산공정의 위생 문제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위생 점검을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표 II-9> 리콜된 킨더 서프라이즈 제품

	제품명	킨더 서프라이즈 (Kinder Surprise)
	리콜 유형	자발적 리콜
	생산지	벨기에 아를롱(Arlon)
	중량	20g, 20g*3개
	유통기한	2022년 4월 20일부터 8월 21일 사이

*출처: More Kinder chocolate products recalled due to salmonella link, The Irish Times,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https://www.fsai.ie>)(검색일: 2024.11.25.)

- (성분) 2022년 필리핀 라면 브랜드 Lucky Me!의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됨
 - 리콜 대상 제품은 태국에서 제조된 5종류의 봉지라면 제품으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아일랜드, 몰타, 프랑스에서 리콜 대상으로 지정
 -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는 섭취 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일랜드, 몰타, 프랑스는 RASFF를 통해 해당 제품의 리콜 사실을 회원국 및 Lucky Me!의 본사가 위치한 필리핀 식품의약국에 통지
 -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FSAI)은 리콜 제품의 사진, 제품명, 중량, 유통기한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그림 II-9> 유럽에서 리콜된 Lucky Me! 라면



*출처: 아일랜드 식품안전청(<https://www.fsai.ie>)(검색일: 2024.11.25.)

- (비위생적 제조) 2024년 10월 코카콜라 오스트리아는 일부 생산 제품이 금속 이물질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품을 리콜
 - 리콜 대상 제품은 오스트리아에서만 유통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코카콜라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협력해 리콜을 진행
 -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4일부터 4월 12일 사이인 약 2,800만 병의 음료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음

3. 일본

가. 유관기관 및 근거규정

□ 일본에서 발생하는 ‘일반식품’의 리콜은 지역 보건기관 및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MHLW)이 관할

-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보건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리콜 정보를 전달받고 리콜 등급을 판별하며, 후생노동성은 지방 보건기관으로부터 리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대중에 전달

□ 일본에서 발생하는 ‘건강 및 기능성 식품’의 리콜은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이 관할

- 특수보건용식품(特定保健用食品)³⁾, 영양기능식품(栄養機能食品)⁴⁾ 및 기능성표시식품(機能性表示食品)⁵⁾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경우 기업은 이를 지역 보건기관 및 소비자청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함
 - 특정보건용식품이 사망 및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함
 - 2024년 9월부터 식품표시법(食品表示法)이 개정되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보고가 의무화됨

3)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영양성분을 함유한 식품

4) 특정 영양성분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

5)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건강 관련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

□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과 식품표시법(食品表示法)은 식품의 리콜 의무를 명시함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리콜되어야 함
 - 후생노동성이 명시한 식품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으로 간주되며, 위반 식품과 동일한 제조 시설 및 라인에서 생산된 위반 우려 제품 또한 리콜 대상에 해당
 - 후생노동성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의 폐기 또는 리콜을 명령할 권리를 보유

<표 II-10> 식품 위생법 위반 제품 예시

1	섭취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된 제품을 제외한 부패·변질·설익은 제품
2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했거나 함유할 우려가 있는 제품
3	미생물로 인해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4	질병을 보유한 가축 또는 폐사한 가축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5	제조 환경 위생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
6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7	기준치 이상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8	유독·유해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9	생산·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출처: 일본 식품위생법(<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233/>)(검색일: 2024.11.22.)

- 식품표시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시장에서 회수(리콜)됨
 - 일본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호두를 포함한 알레르기 항원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함

- 또한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보관방법, 조리방법,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항원,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 법으로 규정된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리콜해야 함

□ 2021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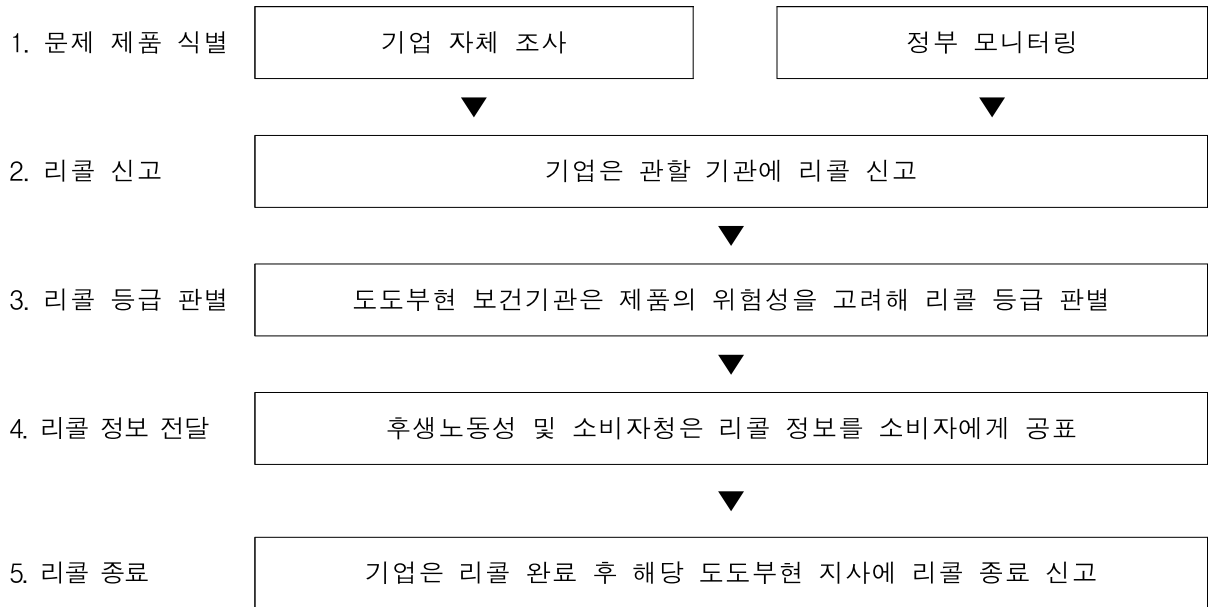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법을 개정해 2021년 6월부터 표준화된 식품 리콜 시스템을 시행
 - 동 개정안은 리콜 신고 및 정보 공개 통합 시스템 시행 및 사업자의 리콜 정보 신고 의무를 명시
 - 기업은 기업명, 제품명, 리콜 사유, 판매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 관련 정보를 도도부현에 신고해야 하며, 특수 보건의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영양 기능 식품의 경우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함

나. 리콜 제도 분석

□ 일본 당국은 제품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나 주로 기업의 자발적인 식품 리콜이 이루어짐

-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59조와 식품표시법 6조 8항에 따라 식품 위생 및 표시 규정을 위반한 식품의 리콜을 시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식품을 회수(리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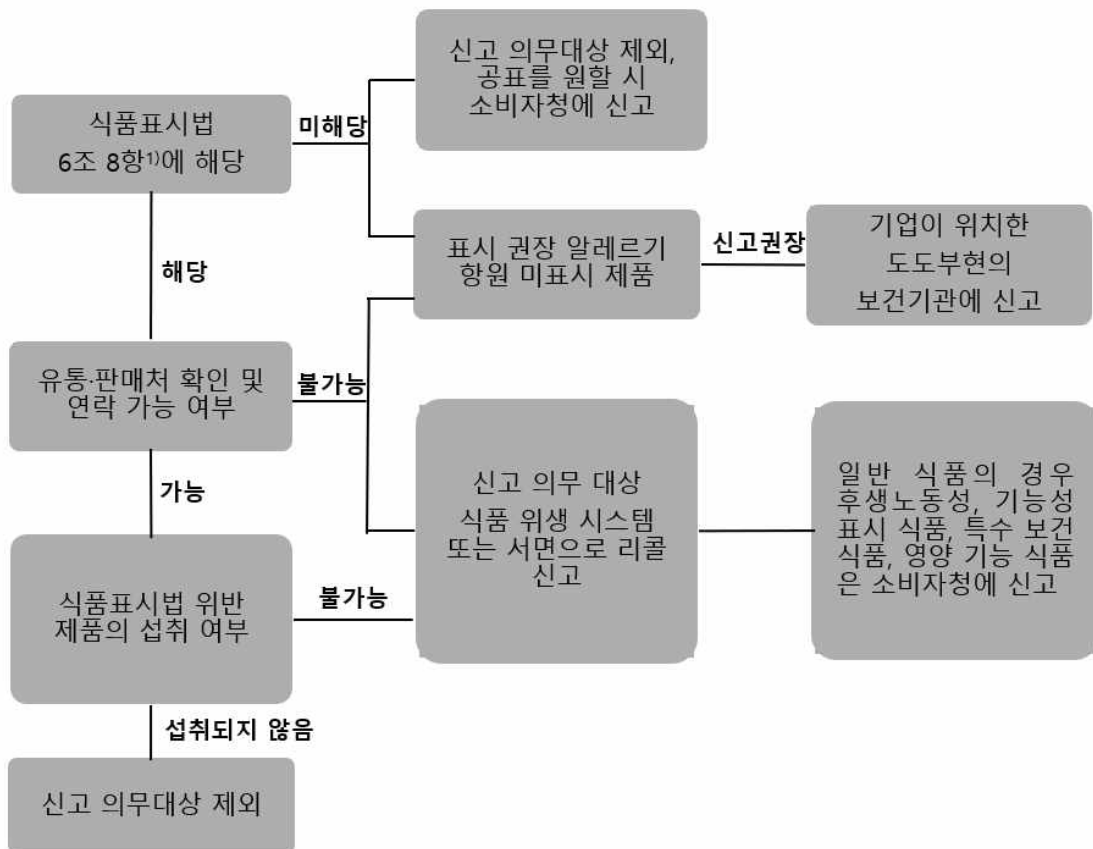
<그림 II-10> 일본 리콜 절차



- (1단계) 기업은 자체 조사 또는 정부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위생법 또는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제품을 식별
- (2단계) 기업은 식품위생신청시스템(食品衛生申請等システム)⁶⁾ 및 관련 지방 보건기관에 리콜 제품을 신고
 - 기업은 일본 식품 위생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 계정을 생성한 후 기업명 및 주소, 리콜 담당 부서의 명칭 및 주소, 제품명, 제품 사진, 판매처별 판매일 및 수량, 리콜 개시 일자, 리콜 방식, 피해 사례 등 리콜 정보를 신고
 - 기업은 동일한 정보를 지역 보건기관에 신고하며, △기능성표시식품 △특수 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청에 직접 신고
 - 단, 이미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을 초과한 제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6) 일본 식품 위생 신청 시스템(<https://fas.mhlw.go.jp/faspte/page/login.jsp>)

<그림 II-11>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 신고 절차 예시



1) 식품표시법 6조 8항은 식품표시법을 위반해 제품의 안전성이 영향받은 경우 제품의 리콜이 요구됨을 명시
출처: 食品リコール報告制度とは ～食品衛生法・食品表示法からみたポイント～, Food Uchida IT(2024.07.03.)

- (3단계) 도도부현 보건기관은 제품의 위험성 및 위반 법률을 고려해 리콜 등급을 판별
- (식품위생법 위반)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에 오염된 채소와 같이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1등급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낮은 위험성의 성분 부적합 식품은 2등급, 위험성이 희박한 첨가물 기준 미준수 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

<표 II-11> 일본 리콜 등급 분류 - 식품위생법 위반

구분	상세 조건
1등급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등급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3등급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kigu/index_00011.html)(검색일: 2024.11.22.)

- (식품표시법 위반) 알레르기 항원, 유통기한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 표시를 누락 및 잘못 표시한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은 위험성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

<표 II-12> 일본 리콜 등급 분류 - 식품표시법 위반

구분	상세 조건
1등급	섭취 시 즉시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등급	섭취 시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나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kigu/index_00011.html)(검색일: 2024.11.22.)

- (4단계) 후생노동성 및 소비자청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공표
 - 일본 소비자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⁷⁾ 및 소비자청 웹사이트⁸⁾를 통해 리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은 도도부현 보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리콜 정보를 분석해 다른 제품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식품 안전 개선 및 지도에 활용
- (5단계) 기업은 리콜 제품의 회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리콜 종료를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

□ 일본 내 발생한 리콜 사례는 후생노동성(MHLW) 및 소비자청(CAA) 웹사이트에 게시

- 후생노동성은 공개 리콜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
 -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리콜 발표 일자, 리콜 사유, 제품명 등의 조건을 입력해 해당하는 리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음

7) 후생노동성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ifas.mhlw.go.jp/faspub/IO_S020501.do?_Action=_a_backAction)

8) 소비자청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www.recall.caa.go.jp/>)

<그림 II-12> 후생노동성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Public Recall Information Search' (公開回収情報検索) page. The search form on the left includes fields for 'Recall Number' (回収番号), 'Product Name' (商品名), 'Recall Date' (回収日), and 'Recall Status' (回収状況). The results table on the right lists various recalled products, including 'Recall Number' (回収番号), 'Product Name' (商品名), 'Recall Date' (回収日), and 'Recall Status' (回収状況).

回収番号	商品名	回収日	回収状況	回収先	回収方法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18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11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10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9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8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2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1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7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6	回収済
CLAS01	食品衛生法違反品	2024-11-01	2024-11-01	R01-202400004	回収済

*출처: 후생노동성 리콜 정보 조회 사이트(https://fas.mhlw.go.jp/faspub/IO_S020501.do?_Action=_a_backAction)

○ 일본 소비자청은 리콜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

- 동 웹사이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리콜 사례 및 주요 리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아동용 제품, 노인용 제품 등 세부 카테고리별 리콜 사례 확인도 가능

<그림 II-13> 소비자청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Consumer Affairs Agency Recall Information Site' (消費者庁 リコール情報サイト). The search form on the left includes fields for 'Recall Number' (回収番号), 'Product Name' (商品名), 'Recall Date' (回収日), and 'Recall Status' (回収状況). The results table on the right lists various recalled products, including 'Recall Number' (回収番号), 'Product Name' (商品名), 'Recall Date' (回収日), and 'Recall Status' (回収状況).

回収番号	商品名	回収日	回収状況
2024/11/28	紅豆を主とする健康食品関係について	2024/11/28	回収済
2024/11/22	消費生活用製品の生産製造リコール製品で、金属製電気アタッチメント(電動工具)について	2024/11/22	回収済
2024/11/16	消費生活用製品の生産製造リコール製品で、金属製電気アタッチメント(電動工具)について	2024/11/16	回収済

*출처: 소비자청 리콜 정보 조회 웹사이트(<https://www.recall.caa.go.jp>)

다. 주요 리콜 사례

□ 일본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식품 리콜 사례가 발생

- (성분) 2024년 3월, 일본 코바야시제약(Kobayashi Pharmaceutical)은 홍국(紅麴)을 사용한 기능성표시식품의 리콜을 발표
 - 붉은누룩곰팡이로 쌀을 발효해 붉게 만든 홍국은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탁월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
 - 코바야시 제약은 2024년 1월 홍국 성분을 사용한 기능성 표시 식품의 피해 사례를 인지했으나 비교적 늦은 3월부터 리콜 조치를 시행
 - 일본 소비자청은 해당 제품이 사망, 신장 기능 저하 등 ‘건강 피해와의 관련성이 있어’ 리콜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공지했으며 △제품명 △용량 △포장재 △JAN(Japanese Article) 번호 △판매지역 △판매일자 △판매량 등 소비자의 제품 식별을 돕는 정보를 게시
 - 일본 당국은 소비자에게 즉시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건강에 이상을 느낄 경우 가까운 의료 시설 및 보건소를 방문할 것을 권고
 -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사 결과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며 독성 물질인 푸베룰산(Puberulic Acid)이 발생했다고 발표
- 2024년 9월 기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20명에 달함

<표 II-13> 리콜된 홍국 기능성 표시 식품

제 품			
제 품명	홍국 콜레스테헬프	나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리콜 유형	자발적 리콜		
리콜 사유	소비자에게 건강 피해 유발		
리콜 등급	1등급		
용량	45정, 60정, 90정	40정	90정
판매 지역	일본 전국	히로시마 지방	호쿠리쿠 지방

*출처: 일본 소비자청(<https://www.recall.caa.go.jp/>)(검색일: 2024.11.25.)

- (라벨링) 일본 식품표시법에서 요구하는 표기 사항을 오기하거나 누락한 상품의 리콜이 발생
 - 2024년 11월 일본 관동지방의 식료품점 야오코(Yaoko)에서 판매된 5,721개의 즉석식품이 보관 방법 미표기로 리콜
 - 리콜 대상 제품은 새송이버섯을 사용한 반찬 및 생강 조림 2종으로 확인
 - 2024년 11월 일본 식품수입업체 하모니(Harmony)는 인도에서 수입한 Parle-G 비스킷의 리콜을 발표
 - 해당 제품은 라벨의 원재료명, 용량, 영양 성분표의 표기에 오류가 적발되었으며 또한 알레르기 항원 ‘유제품’의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11월 일본 식품기업 모리즈미 제면(Morizumi Seimen)은 알레르기 항원의 표기 오류로 ‘된장라면 인기 3점 모음’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
 - 해당 제품은 필수 표기 알레르기 항원인 밀, 표시 권장 알레르기 항원인 닭고기, 사과와 함유 사실을 미표기

<표 II-14> 리콜된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

제 품			
제 품명	파와 마늘 기름에 볶은 새송이버섯	Parle-G 비스킷	된장라면 인기 3점 모음
리콜 유형	자발적 리콜		
리콜 사유	보관방법 미표기	필수 라벨 표기사항 오류	알레르기 항원 표시 오류
리콜 등급	2등급	1등급	
용량	80g	79.9g	590g
판매지역	일본 관동지방	일본 전국	일본 전국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리콜 정보 웹사이트(https://ifas.mhlw.go.jp/faspub/IO_S020501.do?_Action=_a_backAction)(검색일: 2024.11.25.)

- (위생) 일본에서는 곰팡이 발생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의 리콜이 다수 발생
 - 2024년 9월 일본 식품기업 고베 물산(Kobe Bussan)은 유통한 일부 코코넛 브라우니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후 해당 제품의 리콜을 발표
 - 2024년 10월 일본 식품기업 다이도(Daido)는 생산한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해 제품의 리콜을 발표

<표 II-15> 리콜된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

제 품		
제 품명	코코넛 브라우니	떡볶이 떡
리콜 유형	자발적 리콜	
리콜 사유	곰팡이 발생으로 제품 오염	
리콜 등급	2등급	
용량	1박스(5개입)	250g
판매 지역	일본 전국	

*출처: 일본 패밀리마트(<https://www.family.co.jp/>), 일본 소비자청(<https://www.recall.caa.go.jp/>)(검색일: 2024.11.25.)

III. 결론 및 시사점

1. 국가별 제도 비교분석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모두 다수의 식품 리콜 기관이 존재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식품 리콜을 관할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및 각 회원국 내 식품안전기관이 식품 리콜을 관할
 - 프랑스에서는 농업식량주권부(MASA) 산하 식품총국(DGAL)이 국내 식품 리콜을 관리하며, 독일에서는 식품기업이 위치한 각 연방주의 식품안전 기관과 연방정부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식품 리콜을 관할
-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소비자청(CAA)이 식품 리콜 관할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모두 자발적인 리콜 제도를 시행

- (미국) 식품의약국과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은 자발적 리콜 제도 시행 및 권장
 - 단, 기업이 자발적인 리콜 시행에 불응할 시 식품의약국(FDA)은 의무적 리콜(Mandatory Recall)을 시행하며,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공공 보건 경고를 발행하고 제품의 압수 및 압류를 진행
- (유럽연합)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모두 자발적 리콜 제도 시행
 -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식품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는 유럽연합이 직접 개입

- 프랑스 및 독일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인 리콜에 불응할 시 리콜 정보를 직접 발표 및 통지하고 압수, 판매 금지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함
-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 등 관할 기관이 리콜을 명령할 권한 또한 존재

□ 미국과 일본은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리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리콜 등급을 구분하지 않음

- 미국 및 일본은 제품이 건강에 끼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리콜 등급을 구분
 - 단, 일본에서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제품의 리콜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구분
- 유럽연합 및 주요국은 리콜 등급을 분류하지 않으나 RASFF 시스템의 경고 유형으로 리콜 필요성을 구분
 - RASFF에서 경보 통보(RASFF ALERT)가 발행된 제품은 RASFF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정보가 공유되며 리콜, 회수 등 적합한 조치가 요구됨

2. 수출 시 유의 사항

□ 기업은 수출국이 리콜 대상 식품을 규정한 식품 안전 관련 법안을 파악 및 준수해야 함

- (미국) 對미국 수출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서 규정한 부정 식품 및 부정 표시 식품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 부정 식품은 비위생적이거나 유해한 성분, 또는 그러한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을 포함하며, 부정 표시 식품은 제품의 라벨에 표기된 정보 및 표기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
- 육류, 가금육 및 난류(가공) 제품은 연방 육류조사법(FMIA⁹⁾), 가금육조사법(PPIA¹⁰⁾), 난류제품조사법(EPIA¹¹)에 명시된 제품 요건을 준수
- (유럽연합) 유럽연합 식품법(EC) No 178/2002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요건 준수 필요
 - 동 법은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제품,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리콜이 필요함을 명시
 - 유럽연합 내 회원국은 유럽연합 규정에 더해 개별적인 식품 안전 및 리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리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프랑스는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을 통해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회수 및 리콜 의무를 명시
 - 독일은 식품사료법(LFGB)을 통해 인체에 해로운 제품, 섭취하기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할 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회수 또는 리콜하도록 규정

9) Federal Meat Inspection Act

10)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11) Egg Products Inspection Act

- (일본) 일본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에서는 해당 법안을 위반한 제품은 반드시 리콜되어야 한다고 명시
 -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한 제품,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을 규정 위반 제품으로 간주하며,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위반 제품과 동일한 제조라인 및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한 리콜 대상 제품으로 판별
 - 식품표시법은 알레르기 항원, 유통기한, 조리방법 등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규정
 - 2021년 6월부터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법이 개정되며 식품 사업자는 제품 리콜 정보 및 개시 사실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또한 2024년 9월 식품표시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며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보고가 의무화됨

□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리콜은 품목에 따라 관할 기관이 상이해 기업은 적합한 기관에 리콜 사실을 신고해야 함

- (미국) △육류 △가금류 △난류(가공) 제품은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관할이며, 이 외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국(FDA)이 담당
 - 특히 난류 제품의 경우 신선 난류는 식품의약국이, △분말 △액상계란 등 가공된 난류 제품의 경우 식품안전검사국이 담당
 - 담당 기관에 따라 리콜 절차가 상이하므로 기업은 제품별 담당 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기관과 협력해 적합한 리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일본) 일반 식품의 리콜은 후생노동성(MHLW)이 관할하며, △특수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리콜은 소비자청(CAA)의 관리하에 이루어짐
 - 일반식품 리콜 시 식품기업은 해당하는 도도부현의 보건기관 및 후생노동성이 개설한 식품 위생 신청 시스템에 리콜 관련 정보를 신고하며 관련 정보는 추후 공고됨

- 리콜 대상 제품이 특수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소비자청에 제품 리콜 신고를 해야 함

□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식품 리콜 정보는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관련 정보가 모든 회원국에 공유

- 유럽연합 회원국은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식품이 시장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RASFF 경보 통보(RASFF ALERT)를 발행
 - RASFF 경보 통보는 문제 제품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및 RASFF에 가입된 기타 유럽 국가에 공유
 - 정보를 공유받은 회원국은 문제 제품을 식별하고 리콜을 비롯한 적합한 안전 조치를 시행
-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위생 및 안전 문제는 RASFF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되며, 문제 제품은 추후 유럽에서 연쇄적으로 리콜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미국 식품의약국(FDA)(www.fda.gov)
2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조사국(FSIS)(www.fsis.usda.gov)
3	프랑스 리콜 웹사이트 Rappel Conso(https://rappel.conso.gouv.fr/)
4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MASA)(https://agriculture.gouv.fr)
5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MINEFI)(https://www.economie.gouv.fr/)
6	독일 식품소비자보호청(BVL)(https://www.bvl.bund.de/)
7	일본 후생노동성(MHLW)(https://www.mhlw.go.jp)
8	아일랜드 식품안전청(https://www.fsai.ie)
9	유럽 식품안전청(https://www.efsa.europa.eu)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https://commission.europa.eu/)
11	일본 소비자청(https://www.caa.go.jp/)
12	유럽연합 법률 조회 웹사이트(https://eur-lex.europa.eu/)
13	일본 법률 조회 웹사이트(https://laws.e-gov.go.jp)
14	프랑스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15	독일 식품사료법(LFGB)(https://www.gesetze-im-internet.de/lfgb/_40.html)
16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17	Sécurité sanitaire : en quoi consiste le rappel des produits alimentaires ?, Harmonie Sante(2024.03.15.)
18	Comment ça marche, un rappel de produits ? Six questions pour tout comprendre, Actu.fr(2022.04.14.)
19	So funktionieren Lebensmittlrückrufe und diese Rechte haben Verbraucher, Joyn(2024.02.14.)
20	Lebensmittlrückruf: Wie das funktioniert und welche Rechte Sie haben, Verbraucherzentrale(2024.06.24.)
21	Recall Information Notification System for Food and Other Products, Tokyo Bureau of Public Health
22	Ferrero recalls 3,000 tonnes of Kinder chocolate after Salmonella contamination, rfi(2022.05.27.)
23	Recall of Kinder chocolate eggs expanded: children sick in multi-country outbreak, Food Safety News(2022.04.07.)
24	Kinder chocolates recall: EU agency urges further investigation at Belgian plant, Euro News(2022.04.15.)
25	Lawmakers push for accountability after 10th death linked to Boar's Head listeria outbreak, CNN(2024.09.26.)
26	FDA elevates recall in 7 states of California farm's rice, which may contain foreign 'rodent' object, The Sacramento Bee(2024.07.20.)
27	Coca-Cola HBC Austria recalls millions of plastic bottles over safety concerns, Euro News(2024.10.25.)
28	Coca-Cola issues major recall as 26 million bottles may contain metal splinters, Mirror(2024.10.24.)
29	'Lucky Me' noodle brand banned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Marketch APAC(2022.07.07.)
30	食品の自主回収（リコール）制度について, Mie Prefectural Government

31	健康食品に関する事故発生時の報告・回収、損害賠償責任を解説, Business Lawyers(2024.08.27.)
32	食品等のリコール情報届出制度について, Kanagawa Prefectural Government
33	食品リコール報告制度とは ～食品衛生法・食品表示法からみたポイント～, Food Uchida IT(2024.07.03.)
34	Product Recall: about the regulatory framework, Platana(2024.07.05.)
35	Panoramic Product Recall Germany, MWE(2024.10.07.)
36	Food Recall Classes,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검색일:2024.11.21.)
37	Best Recall Practices Guidelines - Part 2 - Food Products, Sidley(2021.04.)
38	機能性表示食品 健康被害情報の報告など 9月から法的義務へ, NHK(2024.06.27.)
39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制度変更、ポイント解説 ウェルネスフード・ワールド第116回, Global Nutrition Group
40	120명 사망한 일본 ‘붉은누룩 건강보조제’, 원인 밝혀졌다, 경향신문(2024.09.19.)
41	6月から食品リコール情報を一元化、事業者に届出を義務づけ, NetIB-NEWS(2021.03.01.)
42	食品衛生法とは？改正の内容と押さえておくべき重要なポイントをわかりやすく解説, Food Tech Japan
43	식약처, “日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해외직구 주의”, 한강 Times